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65
----------	-------

발의연월일 : 2026. 7. 9.

발 의 자 : 김용만 · 허성무 · 윤후덕
양부남 · 한민수 · 진선미
이훈기 · 조승래 · 권향엽
김태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 학생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의 경우 동일한 보호 수준이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 보호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
입주하거나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
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생 략)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 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 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 <u>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u>학원이 입주하거나 위치한 건 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 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u>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